

학교안전공제 제도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사고]

2022. 4.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Jeonbuk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차 례

I . 공제회 일반사항

1. 목적 및 기능	1
2. 설립배경 및 연혁	1
3.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조직도	2
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보상제도 비교	2
5. 법적 성격	3
6.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4
7. 공제료의 부과 및 납부	4

II .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

1. 학교안전사고 개념 및 처리절차	5
2. 공제급여 종류 및 청구서류	7
□ 요양급여	8
- 간병료	12
□ 장해급여	14
□ 간병급여	14
□ 유족급여	15
□ 장의비	15
□ 위로금	16
□ 보전비용	16
3. 공제급여 지급제한	17
4. 공제급여 지급결정	18
5. 공제급여 부정수급	18

III. 심리상담 지원 제도

1. 심리상담 지원 제도	19
2. 심리상담 지원 절차	21

IV.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제도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제도	22
2.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절차	24

I 공제회 일반사항



1. 목적 및 기능

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치료비 보상

※ 모든 교직원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각각의 법률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출처> 교육부 학생안전총괄과-1608(2021. 2. 22.)[교육공무직원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건의에 대한 회신]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이 지출한 손해방지·경감 비용 및 긴급 조치 비용 등 지원

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가해학생 측에게 구상권 행사

2. 설립배경 및 연혁

가. 설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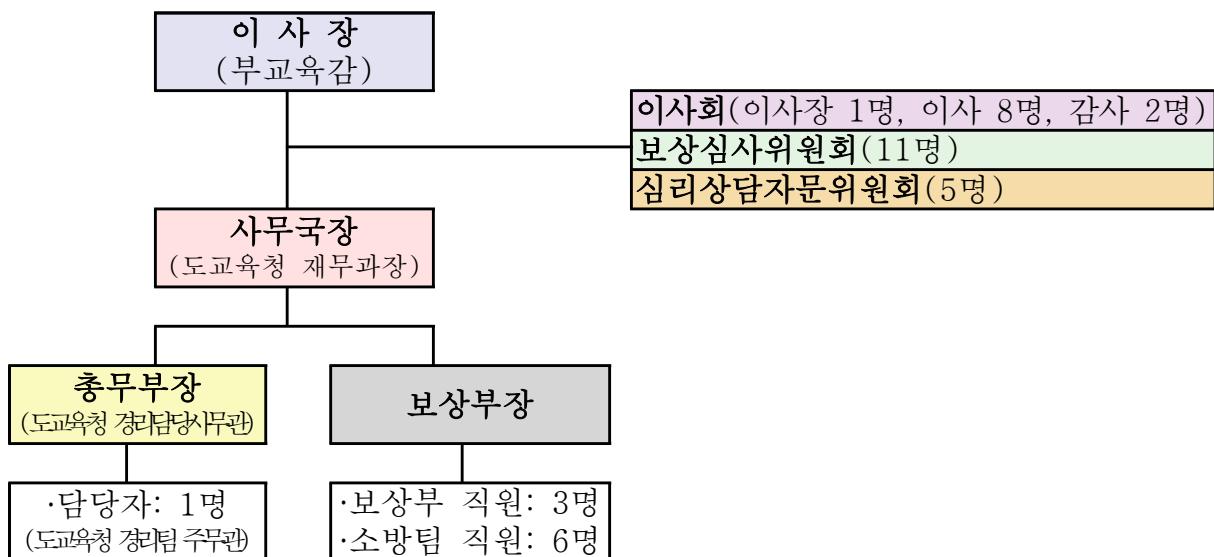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토록 규정(1991. 5. 3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나. 주요연혁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창립총회 개최 (1991. 2. 11.)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인가/설립 등기 (1991. 3. 21./1991. 4. 9.)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개시 (1991. 9. 1.)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07. 1. 26./2007. 9. 1.)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해산 이사회 개최 (2007. 7. 24.)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설립위원회 개최 (2007. 8. 8.)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해산 허가/등기 (2007. 8. 27./2007. 9. 3.)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설립 등기/업무개시 (2007. 9. 3./2007. 9. 1.)
 - 설립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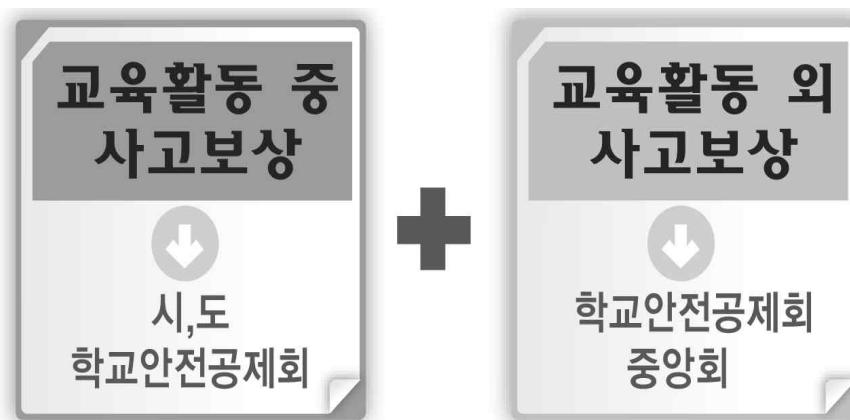
3.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조직도



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보상제도 비교



- ① 학교안전사고
- ② 학교급식 / 가스중독
- ③ 일사병
- ④ 이물질의 섭취
- ⑤ 이물질과의 접촉(피부염)
- ⑥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① 교육활동 및 학교직원 노무
업무와 관련한 제3자의 인적 ·
물적 피해
- ②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 · 파손
- ③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 ④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가. 특수법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
- 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공제료 부과·징수, 공제급여의 지급,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 지급, 구상권 행사 등 업무수행
- 공제회에 관하여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나. 「학교안전법」 시행(2007. 9. 1.) 이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법률시행 이전	법률시행 이후
성 격	◦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 「학교안전법」에 의한 특수법인
명 칭	◦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가입학교	◦ 초·중·고 평생교육시설 ◦ 사립유치원(임의가입)	◦ 초·중·고 평생교육시설 ◦ 사립유치원(의무가입) ◦ 외국인학교(임의가입)
가입대상	◦ 학생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공 제 료	◦ 이사회에서 결정	◦ 매년 교육부장관이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 고시 기준 내에서 이사회 결정
보상범위	◦ 교내·외 교육활동 중 사고 ◦ 학교 체류시간 중 사고 ◦ 교육계획에 의한 특별활동 중 사고 ◦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안	◦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사고 ◦ 학교 체류시간 중 사고 ◦ 교육계획에 의한 특별활동 중 사고 ◦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안 ◦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고 ◦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학교폭력사고(단, 가해자에게 구상)
보상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 소송비용, 합의금 지원	◦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위로금 ◦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비용 등
사고통지	◦ 치료 완치 후 신청	◦ 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통지(의무)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6.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가. 공제가입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초·중·고등학교)장
-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고교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장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의한 한국학교장

나.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학생:**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
- **교직원:** 모든 교직원이 공제회로부터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함
<출처> 교육부 학생안전총괄과-1608(2021.2.22.)[교육공무직원 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건의에 대한 회신]
- **교육활동참여자:**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7.

공제료 부과 및 납부

가. 공제료 개념 및 부과

- 공제회 보상제도 운영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공제가입자(학교장) 또는 피공제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 도내 모든 학교 공제료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괄로 대납함
- 공제료는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학교급별로 책정하고 공제가입자에게 통보

나. 납부 방법

- 납부인원: 매년 4월 1일 전북교육통계에 의한 재적학생 수
- 납부금액: 재적학생 수 × 학교급별 공제료 기준액
- 매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납부

II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



1.

학교안전사고 개념 및 처리절차

가. 학교안전사고(「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

-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학교 안팎의 사고
 -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

교육활동이란?

- 「학교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라 장소적+시간적+내용적 요건이 부합해야함
- ①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장 관리·감독 하에 학교 안·팎(장소)에서 행하는 수업 등의 활동
 - ② 학교장 인정 행사·대회 참가 활동(내용)
 - ③ 등·하교·학교체류·직업체험·직장견학·현장실습·기숙사생활
 - ④ 집합·해산장소와 거주지의 왕복시간 중의 활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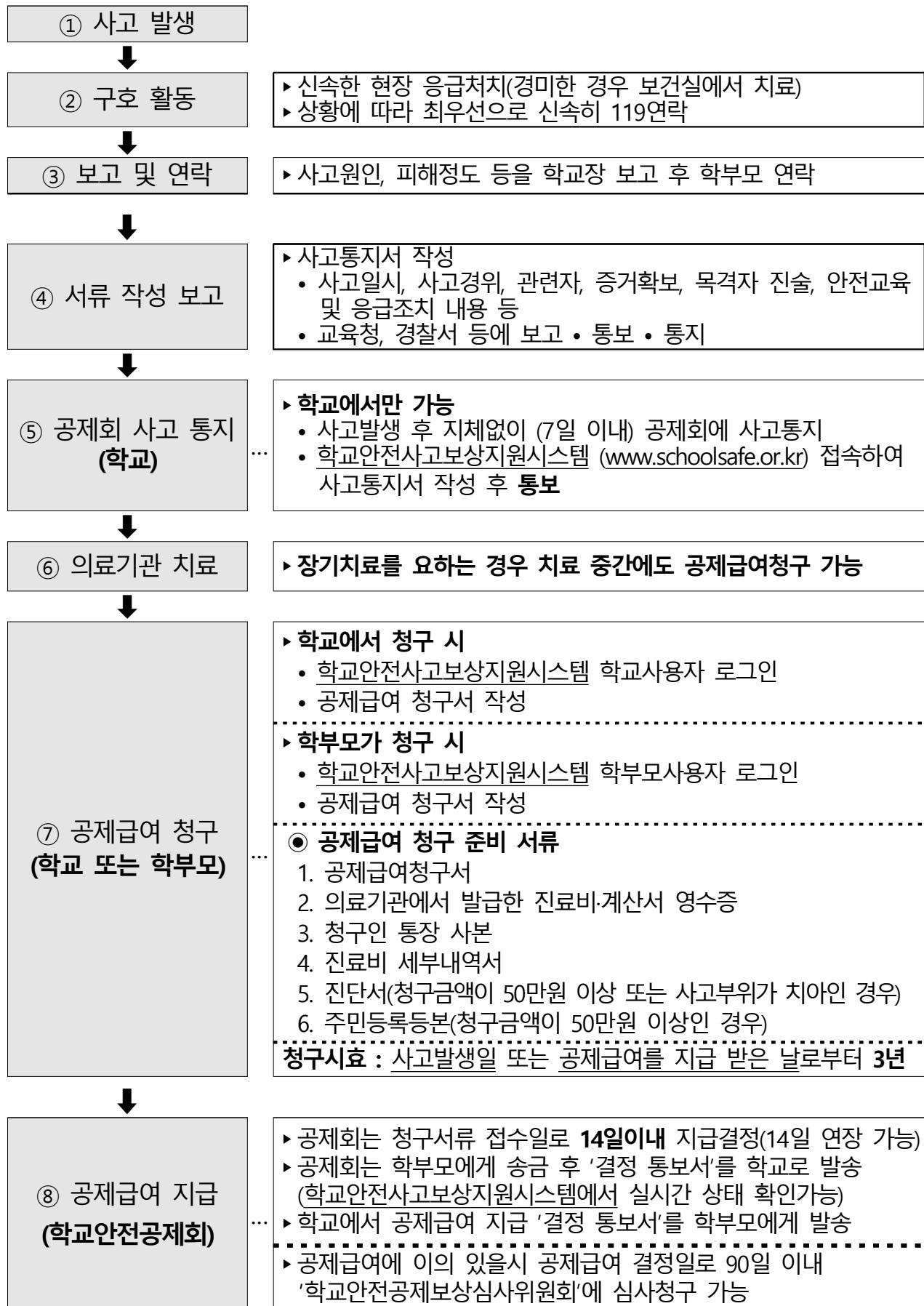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이란?

「학교안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질병만 해당함

- ①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② 일사병(日射病)
- ③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④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 119구조대 연락 또는 신속하게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 지체 없이(통상 7일 이내)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통보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제급여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함(지급 시 결정통보서 발송)



2.

공제급여 종류 및 청구서류

가. 공제급여 종류 및 내용(「학교안전법」 제36조~제40조의2)

구 분	내 용	비 고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36조
장해급여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u>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u>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	법률 제37조
간병급여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u>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u>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	법률 제38조
유족급여	피공제자가 <u>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u> 「국가 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여 지급	법률 제39조
장의비	피공제자가 <u>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u> 「국가 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법률 제40조
위로금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4,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40조 의2

나. 요양급여

: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에게 치료에 소요된 비용 지급

「학교안전법」 제36조(요양급여)

- ①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 ②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 요양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 아래 서류 이외에도 공제급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서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작성

- 청구인 통장사본

: 통장 맨 앞장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함이 기재된 부분 복사하거나 은행에서 계좌개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병원 발급)

: 카드매출전표(카드영수증)나 현금영수증 인정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 발급)

- MRI판독지

: 병원에서 MRI 촬영 한 경우

- 진단서(병원 발급)

: 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치료부위가 치아인 경우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약국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대납 확인서

: 학교카드 또는 교원 사비로 치료비를 대납한 경우

(전북도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 제도→학교안전공제 관련 서식)

○ 요양연장신청 제도

- 「학교안전법」상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장래에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요양연장신청을 하여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예시) 초등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치아를 다쳤는데 현재로서 가능한 치료는 다 했고
'학생이 아직 성장기여서 성장완료 후 성인이 되었을 때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라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
- 공제회의 요양연장신청 승인 결정 후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피공제자가 나중에 치료를 받은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참 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대법원 판례(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공제급여 청구)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까지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요양연장신청 서류

- 요양연장신청서
(전북도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 제도→학교안전공제 관련 서식)
-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① 피공제자가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 ② 향후 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대한 소견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요양급여 지급범위

-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님
- 「학교안전법」 제3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비급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함
- 지급 범위 예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9.1.>

[]외래 []입원([]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급여		비급여		금액 산정내용	
항목	일부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7)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8) 환자부담 총액 (①-⑥)+(3)+(4)+(5)	(9) 이미 납부한 금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약품비					
	주사료	행위료 약품비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 · 교정료						
시행령별표2제4호의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포괄수가진료비							
합계 ① ② ③ ④ ⑤							
		전액 지급	전액 지급	법률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항목만 지급			

- 비급여 항목 인정기준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제도 상의 요양급여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비급여항목은 치료의 필수적 여부, 건강보험기금운용의 정책적 측면 등이 고려되어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으로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공제회는 비급여 항목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만을 지급한다.**

- ① **입원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은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상급병실(3인실 이하)**의 입원료를 지급할 수 있음 그 외 경우 상급병실료 지급은 불가능
- ② **약제비**: 처방전에 있는 약제비만 지급
- ③ **한방치료**: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 ④ **MRI(자기공명영상진단 Magntic Resonance imanging)**: 의사의 소견에 따라 1회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상병상태가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1회 추가 지급 가능
- ⑤ **무통주사제**: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가능
- ⑥ **성형수술비**
 - 화상 반흔제거 수술비는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2회 이내 인정
 -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흉터 또는 반흔으로 외모에 흉한 모양이 남아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인정
- ⑦ **치아보철**
 - 레진 120,000원, 캐스트코아 134,000원, 포스트 124,000원 범위 내 인정
 - 치아보철비는 치아 1대당 400,000원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지급
 - 임플란트: 1대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치아보철을 한 경우 불인정
- ⑧ **재활보조기**: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가기준으로 인정
- ⑨ **진단서 발급수수료**: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실비 인정

■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인정기준

[간병료]

- ①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경우로서
- ②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간병이 필요한 정도(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할 경우

[부대경비]

- ①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로서
- ②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 간병료 청구 서류

구분	서류명	포함사항
필수서류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명, 사고발생일• 입원기간• 간병기간·범위·등급, 간병필요정도• 회복실, 중환자실 사용여부•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
	간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병인 신분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병인 정보
	전문 간병인 활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간병인 자격증• 간병료 지급 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간병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 간병인 활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공제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택서류	입원 확인서등 의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간호정보조사지, 경과기록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공제자의 간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의무기록

○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

구 분	개 념
전문간병인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
가족간병인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학교안전법 제20조제2항)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민법 제974조)
기타간병인	전문, 가족 간병인 이외의 피공제자가 지정한 간병인

○ 간병료 지급 제외 대상

-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완화의료(호스피스)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간병료를 보상(배상) 받은 경우 중복 보상 불가

○ 간병료 지급 대상 범위

간병료 지급대상 범위(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간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	<input type="radio"/>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옥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	<input type="radio"/>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간병 필요등급(1-3등급) 기본요건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자력생명유지	불가능	가능	가능
자력이동	불가능	불가능	가능
자력 일상생활 동작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간병 필요정도(“항상”, “상당부분”, “부분적으로”) 판단기준

구분	간병필요정도
항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상태로 24시간 감시감찰이 필요한 경우(자력으로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포함) ● 사지마비로 2시간마다 체위변경이 필요한 경우 ● 12시간 방치하는 경우 상병상태가 급속히 악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일부 일상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동 시 다른 사람에게 대부분의 체중을 지탱하게 되는 경우
부분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및 일상생활을 수행 시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 장해급여

: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 한 후(수술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 청구가 가능함

「학교안전법」 제37조(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 장해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장해진단서(상급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급)
※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 병원 재검진 요구할 수 있음
- 장해 검사기록지
- 영상판독검사결과 및 영상정보 CD
- 병원별 의무기록지 일체
-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라. 간병급여

「학교안전법」 제38조(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 상시간병급여: 신경계통, 정신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 수시간병급여: 신경계통, 정신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상시간병급여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간병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장해진단서
-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마. 유족급여

「학교안전법」 제39조(유족급여)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 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 유족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경유한 모든 병원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일체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바. 장의비

: 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며, 법정수급권자인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제 장의를 행한 자에게 지급함

「학교안전법」 제40조(장의비)

장의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 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장의비 청구 시 제출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경유한 모든 병원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일체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사. 위로금

「학교안전법」 제40조의2(위로금)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로금 청구 시 제출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아. 보전비용

: 긴급조치, 소송 및 공탁, 경호서비스 등의 비용 보전(치료비 제외)

「학교안전법」 제48조(비용의 보전)

공제회는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 보전비용 청구 시 제출서류

- 보전비용 청구서
- 비용지출에 관련한 각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3. / 공제급여 지급제한

가. 일반적 제한 사유(「학교안전법」 제44조)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 피공제자, 공제가입자 아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 단, 지급 후 공제회가 구상권 행사 가능

나. 다른 법령과의 중복 보상 제한(「학교안전법」 제45조)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보상 불가

1. 자동차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수련원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3. 레프팅사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4. 수영장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5. 현장실습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6. 선박승선실습 사고: 「선원법」 제2조, 제106조,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7. 공립학교 교직원사고: 「공무원연금법」 제35조
⇒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8. 사립학교 교직원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사학연금공단(1588-4110)
9. 공·사립학교 비정규직 교직원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다. 기타 제한 사유(「학교안전법」 제43조 및 45조)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자해 또는 자살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경우
-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

라. 공제급여 청구 소멸시효(「학교안전법」 제65조)

- 사고발생일 또는 공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

4. 공제급여 지급결정

가. 공제급여 지급심사 및 결정

- 공제급여 청구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 지급여부 결정함 다만,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서류완비일: 모든 청구서류를 제출한 때

- 공제회는 사고관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 위원회’에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할 수 있으며,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 정본이 심사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5. 공제급여 부정수급

가.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

- 「학교안전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나. 부정수급 신고센터

- 신고내용: 과잉·허위 진료, 불법 브로커 개입, 허위신고 등
- 신고방법: 학교안전공제중앙회(<http://www.ssif.or.kr>)홈페이지 접속 후
‘학교안전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 배너 클릭



심리상담 지원 제도



1.

심리상담 지원 제도

가. 심리상담 지원 제도

「학교안전법」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 위 사람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지원 범위: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1년 이내)
- 지원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전북도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제도→신청서 다운로드)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피공제자와의 관계를 증명)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검사 결과서·상담기록
- 지원기간 연장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전북도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제도→신청서 다운로드)
 -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 담당 의사 또는 상담사의 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의무기록지 일체 또는 상담기록

나.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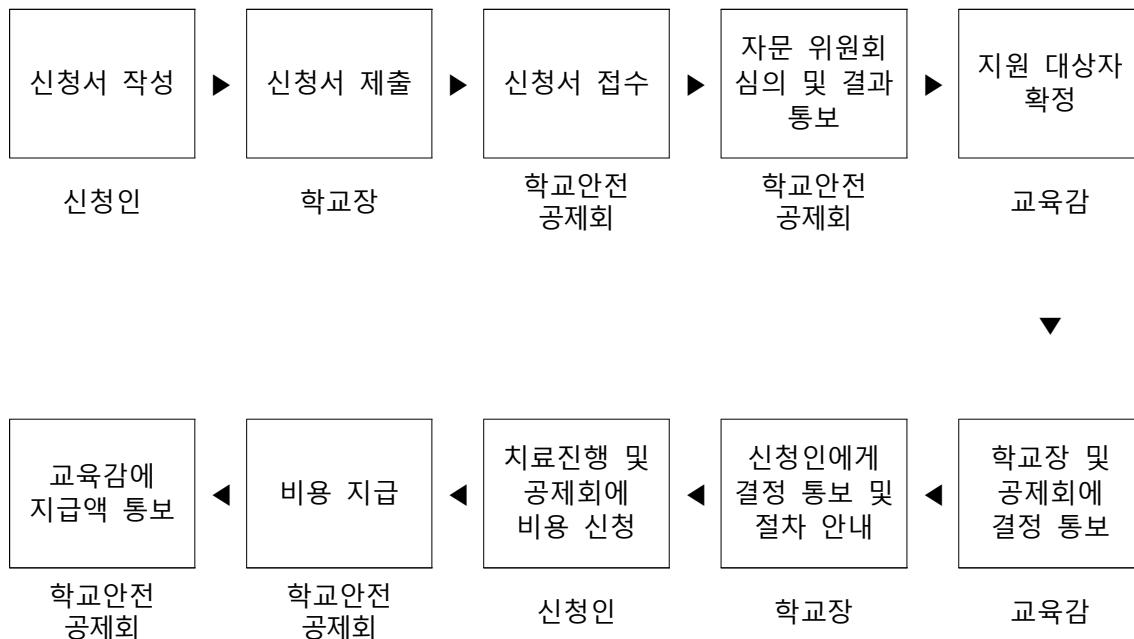
지역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전주	마음상담코칭센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8-1	063-228-5936
전주	마음편한 상담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54-3	063-224-8338
전주	싹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90	063-225-1400
전주	마음뜰 심리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33-1, 2층	063-232-2273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38, 701호	063-223-0075
전주	하람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안골 3길 8-4	063-247-5543
전주	지안 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7-5 3층	063-287-1101
전주	해윰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 2길 3	063-228-0304
군산	그린맘 심리발달연구소	군산시 월명로 215	063-466-6454
군산	군산 본심리상담센터	군산시 축동안3길 24, 201호	063-465-2592
군산	초록숲 인지언어심리상담	군산시 대학로 245, 202	063-465-9999
군산	문현정심리상담센터	군산시 상지곡안4길 47-1, 2층	010-8888-7026
익산	마음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동서로 116	070-8872-3003
익산	물구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24	063-857-8540
익산	(유)예술컴퍼니아트문	익산시 동서로 222	063-855-0423
익산	호남 뮤직테라피연구소	익산시 영등동 신일아파트 105/102	010-7343-9775
남원	(유)이연심리상담지원센터	남원시 대교 2길 29, 1층	063-636-7672
남원	같이심리상담센터	남원시 동문로 83, 101동 101호	063-626-8893
완주	세아심리상담복지센터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91 2층	063-903-6085

* 위 심리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병·의원)에서 치료받은 비용만 지원 가능하며, 그 밖의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원이 불가능함

2.

심리상담 지원 절차

업무 흐름도



학교장 확인 사항

※ 학교장은 적법한 신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서류 반려 가능

- 적법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적법한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적법한 대리 권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치료대상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제회 확인 사항

- 학교안전사고 인정 여부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여부
- 신청인과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관계
- 제출서류 확인 및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

IV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제도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제도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 등을 먼저 지원하고 지원한 모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세부내용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한 비용	
일시보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30일

나.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 청구권자

-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
-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

○ 청구요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중 1가지 이상 의결 후 청구
-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 청구

다.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

지역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전주	마음상담코칭센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8-1	063-228-5936
전주	마음편한 상담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54-3	063-224-8338
전주	싹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90	063-225-1400
전주	마음뜰 심리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총경로 33-1, 2층	063-232-2273
전주	허그맘하그인 심리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38, 701호	063-223-0075
전주	하람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안골 3길 8-4	063-247-5543
전주	지안 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7-5 3층	063-287-1101
전주	해윰 심리 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 2길 3	063-228-0304
군산	그린맘 심리발달연구소	군산시 월명로 215	063-466-6454
군산	군산 본심리상담센터	군산시 축동안3길 24, 201호	063-465-2592
군산	초록숲 인지언어심리상담	군산시 대학로 245, 202	063-465-9999
군산	문현정심리상담센터	군산시 상지곡안4길 47-1, 2층	010-8888-7026
익산	마음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동서로 116	070-8872-3003
익산	물구나무 심리상담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24	063-857-8540
익산	(유)예술컴퍼니아트문	익산시 동서로 222	063-855-0423
익산	호남 뮤직테라피연구소	익산시 영등동 신일아파트 105/102	010-7343-9775
남원	(유)이연심리상담지원센터	남원시 대교 2길 29, 1층	063-636-7672
남원	같이심리상담센터	남원시 동문로 83, 101동 101호	063-626-8893
완주	세아심리상담복지센터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91 2층	063-903-6085

* 위 심리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병·의원)에서 치료받은 비용만 지원 가능하며, 그 밖의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원이 불가능함

2.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절차

□ 학교폭력사고통지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학교사용자 로그인 ► 학교폭력사고통지 ► 사고등록
- 학교폭력사고 통지 시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인적 사항 필수 기재
- 학교폭력사고 통지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통보서(심의위원회 미개최 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보고서,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등 첨부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학교사용자 또는 학부모사용자 로그인 ► 학교폭력피해청구 ► 청구서 작성
※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사용자 로그인을 통하여 직접 청구 가능
- 청구 시 제출서류
 - ① 학교폭력 피해지원 청구서(위 시스템 접속하여 작성)
 - ② 병원 발급 서류: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③ 약국 발급 서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⑤ 통장사본
※ 위 서류 외에 학교폭력과 피해학생 치료의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전문의 소견서, 심리검사결과지, 과거 진료내역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지급절차

- 사고통지 및 청구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조사 후 지급 결정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된 내용을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 앞으로 구상하게 됨을 고지
-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치료비 지원액 결정